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주 민 등 록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고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바, 주민등록증이 회수·파기되거나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함.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에 대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 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해당 시·군 또는 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의 제한) 영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된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이”를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조의2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를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1호의11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건 번호		
신청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소명 방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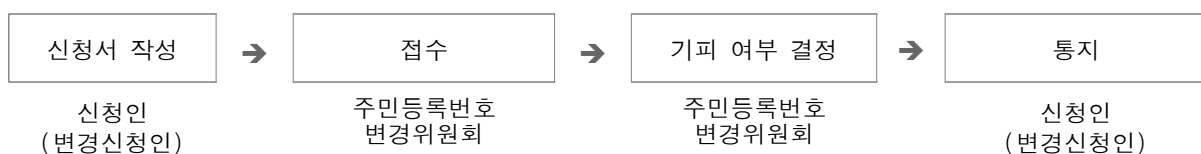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열람대장

일련 번호	열람일시 연월일	열람(교부)신청자			피열람자			열람방법 (본인·세대원·기타)	열람사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등본 사항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등본 사항 전부 포함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포함
		5. 변동사유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9. 동거인	[]포함
	초본 교부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포함	
7. 변동사유		[]포함	
8. 병역 사항		[]포함([]기분(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용도 및 목적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즉시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해제) 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 [] 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유의 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중 1개)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및 그 세대원)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및 그 세대원)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조사회사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 계약자·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증 중 1개)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등,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자(외국인은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 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 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 까지 <u>해당자의 주민등록지</u> 를 관 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u><신 설></u>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 ----- ----- ----- --- <u>해당 시·군 또는 구</u> ----- ----- -----. <u>제10조의2(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u> <u> 의 제한) 영 제39조의2제2항제3</u> <u> 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u> <u>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u> <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 우를 말한다.</u> <u>1. 영 제44조제1항의 사유에 해</u> <u> 당하는 경우로서 회수된 종전</u> <u> 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u> <u> 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u> <u> 하는 경우</u> <u>2.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주민</u> <u> 등록증이 사용불능 처리된 경</u> <u> 우</u>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 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 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 8. (생략)

<신설>

교부제한 신청) -----

-----, ----- 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

합지원센터의 장이 -----

--

5. ~ 8. (현행과 같음)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

<신 설>

9. · 10. (생 략)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
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
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
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신 설>

<신 설>

<신 설>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
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
건처분결과통지서

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
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
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
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
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
와 같음)

12. -----
----- 임시조치결정서, 임
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
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
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
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삭 제>

<u>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증명서</u> <u><신 설></u>	<u><삭 제></u> <u>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7